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길고양이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훼손으로 미관 저해 및 일부 다양한 용기 사용으로 인해 야간 수거작업시 능률 저하 등의 사유로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무상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무상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 (제12조제4항)
 - (제4항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.
-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(제18조제2항)
 - (제2항)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,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청소 행정과장, 주소: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5463, FAX:3396-8750, 메일:silver82@seoul.go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.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**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 ④ (신 설) 제1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) ① (생 략) 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,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③ ~ ④ (생 략)	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(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편리 및 전용봉투 파손 방지를 위해 20세대 미만의 일반 주택 등에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제18조(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 제> ③ ~ ④ (현행과 같음)